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3월 1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3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년 3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하수과장 우의제)

□ 제안이유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04. 3. 11, 법률 제 7188호)과 같은법 시행령(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7호)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안전관리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및 재난관련 업무의 협의 조정등

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원, 시 산하 구청장,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 부천소방서장, 부천남·중부경찰서장, 관할 군부대장, 시교육장, 재난관련 기관·단체장 및 재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위원회 부의안건의 사전 검토와 관계기관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재난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요청을 하고, 출석 위원에게는 수당 지급, 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의 해당기관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3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재해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 ○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인원은 지역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며 사고발생시 즉각 대처할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통합되었음. ○ 지역실정뿐만 아니라 재난·재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할것임. 	

질 의	답 변
○ 위원회 구성 인원을 3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너무 많은 인원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는 염려는 없는지 ?	○ 재난·재해와 관련된 각급기관과 단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할 예정이며 산하에 실무위원회도 두게 될 수 있으며, 관련업무의 조사와 연구도 전문집단에서 할 예정으로 운영의 착오는 없을 것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 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60호
의결 년월일	2005.3.24 (제118회)

제출년월일 : 2005. 3. 10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04. 3. 11, 법률 제7188호)과 같은법 시행령(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7호)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안전관리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및 재난관련 업무의 협의 조정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원, 시 산하 구청장,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 부천소

방서장, 부천남·중부경찰서장, 관할 군부대장, 시교육장, 재난관련 기관·단체장 및 재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위원회 부의안건의 사전 검토와 관계기관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재난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요청을 하고, 출석 위원에게는 수당 지급, 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의 해당기관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3조)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부천시의회 의원
2.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산하 구청장, 시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
3. 부천소방서장

4. 부천중·남부경찰서장
5. 시 지역 관할 군부대장
6. 시 교육장
7. 시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시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들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